

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						
기관	명칭	전화번호							
	주소						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						
사업개요	사업 명칭								
	사업 목적								
	사업시행지역	면적(㎡)							
	사업 내용								
	사업기간								
자금조달 계획	내자						외국자본		
	소계	국고	지방비	자기자금	융자금	기타	소계	차관	기타

「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실시계획서 ※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1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·물건 또는 권리(이하 "토지등"이라 합니다)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 3. 계획평면도·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. 사업시행 기간(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5. 연도별 투자계획, 연도별 재원조달계획,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.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·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 분석·개선대책 8.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소, 환승시설 및 차고지 설치계획 9.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략적인 운영계획[전용차량의 예상 대수(臺數), 배차간격 및 주행속도 등을 포함합니다] 10.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11. 지진피해 감감대책 12. 「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3. 「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·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. 「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. 「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(이하 "대체공공시설등"이라 합니다)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6. 「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7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처리절차

